

제 591 호

1977. 2. 18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편집 : 문화공보관 조용하

전화 76-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6-5444

시보

차례

◎ 조례

제 1643 호 : 서울특별시 세조례개정조례 3

◎ 규칙

제 1672 호 : 서울특별시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규정 중
개정규칙 29

제 1673 호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위원회규칙 중 개정규칙 29

제 1674 호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중 개정규칙 31

◎ 고시

제 34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설설 일부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33

제 35호 : 동사무소 위치 변경고지 34

제 37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34

◎ 공고

제 29호 : 표지정지처분 공고

제 32호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구출물 생산지정업 업종지정 공고 36

제 36호 : 가로영지정 공고 37

제 38호 : 도시계획시설 (지하도) 철정 및 지적승인 37

◎ 예규

제 340호 : 서울특별시 도로운작업부 (승인·부구) 지침 38

◎ 사명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보도계장	공보계장	문화체육국장	문화공보관	월	공
제	기	기	기	기	일	람

제 591 호. 시

보 1977.2.18 49-3

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세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준 인

1977년 2월 18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143호

서울특별시세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절 총 칙

제 1조 (과세의 근거)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세 (이하 "시세"라 한다)의 세목, 과세기체·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령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조 (시세의 의의) ① 이 조례는 시세와 같은 보통세와 목적세를 말한다.

② 법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 3조 (시세의 세목) 시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취득세
2. 등록세
3. 면허세
4. 주민세
5. 재산세
6. 자동차세
7. 농지세
8. 도축세
9. 마권세
10. 도시계획세
11. 소방·공동시설세
12. 사업소세

제 4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기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p>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 한다.</p> <p>제 5조 (남기한의 연장) ① 남세 외무자 또는 특별정수외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남기한의 일일부터 2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제 1항에 의한 남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사항과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남기한까지 관할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세외무자 또는 특별정수외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그 성명 또는 명칭 2. 소속년도 및 세액 3.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p>4. 필요한 연장기간</p> <p>③ 구청장이 제 2항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구청장은 천재지변, 화재, 전화 또는 법정전염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 1항과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남세외무자 또는 특별정수외무자가 미납세액을 납부 또는 납입할 수 있을 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남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⑤ 남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징수한다.</p> <p>제 6조 (허가등의 제한) ① 구청장이 영제 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하고 그 뜻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
--	--

와 성명 2. 허가등의 종목 3. 제한하는 기간 4. 제한하는 이유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를 받은 당해 주무관청은 허가 등의 제한 결과를 소관 구청장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조 (지방세 징수위원회) ① 시장이 지방세 부과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재조사청구를 심의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에 지방 세 징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 는 3급을유이상의 국가 및 지 방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법 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3 년이상 종사한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이상의 직에 종 사한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 문지식과 경험이 충부한자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하는 바에 따른다.
---	---

49-6 제 591 호 시

보 1977.2.18

<p>(5)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6)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다.</p> <p>간사와 서기는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p> <p>간사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7) 공무원이 아닌 회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p> <p>(8)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 8 조 (징수유예신청등) 영 제 30 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에 관한 신청서는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9 조 (작부·비치) 구청·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부·비치하고 필요한</p>	<p>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p> <p>제 10 조 (기부과 사실증명서의 제출) 시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자의 동일파세액체에 대하여 등총의 시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구청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11 조 (탈루 또는 포탈된 징수금의 처리) 탈루·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p> <p>제 12 조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 2 절 취 득 세</p> <p>제 13 조 (납세의무자등) 취득세는 법 제 104 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차량·중기·임목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p>
---	---

제 14조 (파세표준)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법제 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2) 고급주택, 벌장, 끌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와 일반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 15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
(1)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2) 법제 11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 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3) 제 15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것으로 보아 동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신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경과한 사업용 과세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법제 112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 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4)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취득세를 납부한 토지가 그 취득후에 벌장, 끌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예에는 제 15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과세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정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라하지 아니하다.	제 17조 (취득세의 납기) 취득세의 납기는 자진신고납부의 경우를

49-8 제 591 호 시

보 1977.2.18

<p>제의하고는 구청장이 정하되 그 기한은 15일간으로 한다.</p>	<p>류, 광구의 면적, 광업권등록의 년월일과 등록번호.</p>
<p>제 18 조 (신고의무) ① 취득세 과 세율전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20일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구 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p>	<p>9.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 어장의 면적 어업의 면허년월일과 등록번호.</p>
<p>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취득년월일과 취득의 원인 3. 취득물건의 소재지 4. 토지에 있어서는 지목 면적 및 용도</p>	<p>10. 취득물건의 가격 및 필요경비 11.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12. 기타 참고사항</p>
<p>5.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품종) 수령, 주수, 축적량(재적) 6. 건축물에 있어서는 구조, 종별 용도 및 면적 7.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 명칭 정체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p>	<p>(2) 제 1 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 또는 어장이 2 이상의 구에 걸치는 때에는 광구 또는 어장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광구 또는 어장이 2 이상의 시, 도를 걸치는 때에는 제 1 항에 규정한 신고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일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공사시행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8.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p>	

<p>(5) 제 4 항의 부동산의 취득이 법제 108 조 제 5 호와 법제 109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면적 또는 철거의 낸월일 사유와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종별, 용도와 면적을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6) 설탁, 차량과 중기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시공자의 주소, 거소, 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설계서 및 시공비 영세서등을 제시하여야 한다.</p> <p>(7) 영제 76 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부대설비의 종류, 시설 가액, 취득 및 설치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8)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전과</p>	<p>변경후의 지목, 면적 및 시가 토지소재지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지목의 사실상 변경년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및 시공비영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9) 법제 105 조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취득증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취득년월일과 취득원인 4. 재산 목록 5. 제 1 항 각 호의 해당 사항 6. 과세표준액과 과세표준액 산정 근거 기타 참고사항 <p>제 19 조(광산용 임목취득의 단제신청) 법제 108 조제 7 호의 규정에</p>
--	--

49-10 제 591 호 시

보 1977.2.18

<p>의하여 광산용에 공하기 위한 임목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광업권 설정자 또는 광산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취득에 관한 계약서 및 벌채허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득자의 주소, 거소, 성명 또는 명칭 2. 취득물건의 소재지 3. 취득년월일, 벌채허가 년월일 및 벌채기간 4. 수종, 수령, 주수, 축적량(재적) 5. 기타 참고사항 <p>제 3절 등록세</p> <p>제 20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p>	<p>제 21조 (세율) 등록세의 세율은 법제 131조 내지 법제 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의한다.</p> <p>제 22조 (등록세 납부명세서 등 제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세를 납부·고자 하는 자는 납부명세서 3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을 소관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납부서에 세입징수관의 직인을 날인 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에는 미리 납부자가 소정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납부명세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p>제 4절 면허세</p> <p>제 23조 (납세의무자) 면허세는 영 제 124조에서 규정하는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p> <p>제 24조 (과세표준과 세율) 면허세의 세액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p> <table border="0"> <tbody> <tr> <td>제 1종 면허</td> <td>27,000 원</td> </tr> <tr> <td>제 2종 면허</td> <td>21,600 원</td> </tr> <tr> <td>제 3종 면허</td> <td>16,200 원</td> </tr> </tbody> </table>	제 1종 면허	27,000 원	제 2종 면허	21,600 원	제 3종 면허	16,200 원
제 1종 면허	27,000 원						
제 2종 면허	21,600 원						
제 3종 면허	16,200 원						

제 591 호

시

보

1977.2.18 14-11

제 4 종 면허	10,800 원
제 5 종 면허	7,200 원
제 6 종 면허	3,600 원

제 25 조 (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세에 관한 지령서를 교부 받을 때
2. 면허의 경신으로 간주하는 제 2회분 이후의 면허세는 매년분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 5절 주민세

제 26 조 (납세의무자) 주민세는 납기 개시일 현재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체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공동할과 소득할을 각각 부과한다.

제 27 조 (비과세의 예외) 법 제 174 조제 1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계보호대상자중 1973년 4월 1일 이후 다른 시·도로부터 시내로 주소를 이전한 자에 대하여는 공동할을 부과한다.

제 28 조 (과세표준과 세율) (1) 공동할의 세액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개인 3,000 원
2. 법인 30,000 원

(2)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구 分	세 율
소득세 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법인세 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농지세 할	농지세액의 100분의 7.5

제 29 조 (가산세액의 징수) 구청장이 법 제 179 조의 3 제 3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불이행 가산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15일이내로

49-34 제 591 호 서

보 1977.2.18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5호 동사무소 위치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일부 동사무소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한다. 1977. 2. 1 서울특별시장 구자준
---	--

동사무소명	위치변경 내용		변경일자
	변경전	변경후	
관악구봉천7동사무소	관악구봉천동 419	관악구봉천동 120-2	77. 1. 24
관악구방배동사무소	관악구방배동 46-2	관악구방배동 26-6	77. 1. 24
관악구봉천5동사무소	관악구봉천동 466	관악구봉천동산 101-65	77. 1. 24
도봉구 월계동사무소	도봉구월계동 383-30	도봉구월계동 66-5	77. 1. 31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7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제 13호 ('77.1.26)로 추가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을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규정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	실 및 동양공업 전문학교 서부파 에 각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 2. 18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척동산 58 의 5 의 12 블록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학교) 동양공업 전문학교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10,841 ㎡ (3,279.3 평)
---	--

<p>500 평초과 1000분의 50</p> <p>(2) 끌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50</p> <p>(3) 공환지 그 가액의 1000분의 50</p> <p>(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50</p> <p>(5) 전, 담, 과수원, 임야 : 그 가액의 1000분의 1</p> <p>(6) 시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주거전용 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과 비주 거지역 (전용공업지역, 공업 지역 및 준공업지역을 제 외한다. 이하 같다) 내의 영계 142 조의 2 제 2 항에서 규정한 공장용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6</p> <p>(7) 제 1 목 내지 제 6 목 이 외의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3</p> <p>2. 건축물</p>	<p>(1) 주택 그 가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제자로 각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p> <p>500 만원이하 1000분의 3</p> <p>500만원초과 1000분의 5</p> <p>1000만원초과 1000분의 10</p> <p>2000만원초과 1000분의 30</p> <p>3000만원초과 1000분의 50</p> <p>(2) 끌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p> <p>(3) 시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과 비주거지 역내의 영계 142 조의 2 제 2 항에서 규정한 공장용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p> <p>(4) 제 1 목 내지 제 3 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p> <p>3. 선박</p> <p>(1) 고급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50</p>
---	---

49-14 제 591 호 시

보 1977. 2. 18

(2) 제 1 목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4. 광 구

1 헥타르당 50원·나만 사실
상으로 휴광증인 경우에는 폐세
하지 아니한다.

② 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
산에 대한 세율은 최초로 개시되
는 날기일로부터 5년간 제 1 항
제 1 호제 7 목 및 제 2 호제 4 목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500 으로
한다.

제 33 조 (납기)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각각
징수한다.

1. 토지, 광구에 대한 재산세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 :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 34 조 (토지에 관한 신고) ①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
실상으로 지목의 변경되었을 때에
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 년
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한 신고서를 그 사용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범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
용하던 토지를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를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게 된
때에는 제 1 항의 예에 따라 관
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영제 142 조제 1 항제 1 호제 6 목
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를 소유
한 자는 매년 토지에 대한 재
산세 납기 개시일 30일 전까지
공한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신고기간을 정하여
미리 땅고한 후 이를 신고케 할
수 있다.

제 35 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 ① 나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할 때
 2. 건축물이 멀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 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할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 ② 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6 조 (광구에 대한 신고의무)

① 광구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소멸하였을 때, 또는 사실상으로 유동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광구소재, 종류, 등록번호, 존속기간 면적, 휴광기간 주체 사용소 또는 영업소(주된 사용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있는 장소)의 소재지와 그 명칭, 납세의무의 발생, 이동 소멸 또는 유동년월일과 그 사용 기타 필요자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구가 2이상의 구에 걸치는 때에는 광구의 면적이 많은 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7 조 (서비에 관한 신고의무)

49-16 제 591 호 시

보 1977.1.28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경거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발생의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면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때

제 38 조 (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 34 조내지 제 37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9 조 (재산세과세대장관리) 재산세과세대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 7 절 자동차세

제 40 조 (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4기통초과)

(단위: 원)

등급	측간거리	1 대 당 년 세 액		
		영업용	비영업용	
1	275센티미터 이상	84,000	1,122,000	1,320,000
	275센티미터 미만	40,000	544,000	640,000
2	275센티미터 이상	67,200	897,600	1,056,000
	275센티미터 미만	32,000	435,200	512,000

제 591 호 시

보 1977.2.18 49-17

2. 소형승용자동차(4기통이하)

등급	배기량	1 대당년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	1500 세씨 초과	30,400	249,600
	1000 세씨 초과	26,000	172,800
	1000 세씨 이하	21,200	96,000
2	1500 세씨 초과	24,400	199,800
	1000 세씨 초과	20,800	138,600
	1000 세씨 이하	16,800	76,800

3. 기타 소형승용자동차

구분	영업용	1 대당년세액	
		원	원
1 대당년세액	16,800	51,200	

4. 승합자동차

구분	1 대당년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82,000	원
대형전세버스	50,000	
소형전세버스	41,000	
대형일반버스	35,000	77,000
소형일반버스	21,000	44,000

49-18 제 591 호 시

보 1977.2.18

5. 화물자동차

화 물 척 채 정 량	1 대 당 년 세 액	
	영 업 용	비 영 업 용
1,000 킬로그램 이 하	4,400 원	19,000 원
2,000 킬로그램 이.하	6,400	23,000
3,000 킬로그램 이.하	9,000	32,000
4,000 킬로그램 이.하	12,000	42,000
5,000 킬로그램 이.하	15,000	53,000
8,000 킬로그램 이.하	24,000	87,000
10,000 킬로그램 이.하	30,000	105,000
10,000 킬로그램 초과	36,000	126,000

6. 특수자동차

구 분	1 대 당 년 세 액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대 형 특 수 자 동 차	24,000 원	105,000 원
소 형 특 수 자 동 차	9,000	39,000

7.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구 분	1 대 당 년 세 액	
	영 업 용	비 영 업 용
3륜 자동차	3,100 원	11,500 원
대 형 2륜 차	2,200	12,000
소 형 2륜 차	1,100	5,800

제 41 조 (납기) ① 자동차세는 1년당 낸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개시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에서 징수한다.

기 분	기 간	납 기
제 1 기 분	1월부터 3월까지	3월 16일 부터
		3월 31일 까지
제 2 기 분	4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 부터
		6월 30일 까지
제 3 기 분	7월부터 9월까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 까지
제 4 기 분	10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② 구청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낸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납기개시 후에 원시 취득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15일간의 납기한을 정하여 영계 146 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자동차세

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 42 조 (신고의무) ① 법 제 195 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을 소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동차소유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상면· 또는 영장

2. 자동차의 종류, 연정, 제조번호, 기관번호, 용도 및 적재량 또는 승차정원	납기 개시일 현재의 농지세 대작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그 농지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농지를 타인에게 경작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경작자에게 부과한다.
3. 정 치 장	제 45 조 (농지소재지등의 신고) 영
4. 자동차의 등록번호	제 151 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 또는 경작에 관한 신고는 주소 성명, 농지의 소재, 지목,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납기 개시 30일 전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 배기량, 기통수, 측간거리	제 46 조 (자력 상설 감면 등) 시장은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농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6. 취득가격	제 47 조 (세율) 농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신고사항 발생년월일과 그 사유	1. 갑 류
8. 기타참고사항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자동차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신고일 때에는 그 자동차의 전 소유자와 연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3 조 (대작비치) 구청장은 자동차세 대작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 8 절 농 지 세	
제 44 조 (납세의무자 등) 농지세는	

기준 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다음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5 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6
15 만원을 초과하는금액 100분의 8
30 만원을 초과하는금액 100분의 10

2. 물 류

작기별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5 만원이하의금액 100분의 10
15 만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 15
30 " 100분의 20

제 48 조 (이동지의 신고) (1) 법 제 2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작물의 종류와 관세지 또는 비관세지가 된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가 제 1 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농지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9 조 (소득금액 신고) 법 제 2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세의부자는 그가 소유 또는 경작하는 농지를 해당 농자신부에 대하여 각 농자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작물의 종류, 작기중의 소득금액 소득산출의 기초와 일제 147 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납기까지 20 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0 조 (조사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농지조사위원회위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일당	3,000 원
여비	1,500 원

<p>제 51 조 (남기등) ① 농지세의 납기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p> <p>1. 갑 류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 까지</p> <p>2. 을 류 제 1기 8월 16일부터 8월 31일 까지 제 2기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까지</p> <p>② 법 제 21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 징수하는 농지세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작품의 수확이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수한다.</p> <p>제 9 절 도 축 세</p> <p>제 52 조 (남세의무자) 도축세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 시장이 조사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돼지의 도살자에게 부과한다.</p> <p>제 53 조 (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p> <p>1. 소 도살하는 소가액의</p>	<p>1000분의 8</p> <p>2. 돼지 도살하는 돼지가액의 1000분의 10</p> <p>제 54 조 (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내외 난기한을 정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제 55 조 (특별징수의무) ① 도축세는 도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도장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② 소·돼지를 도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시킬 수 있다.</p> <p>제 56 조 (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p>
--	--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장의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장의 경영을 폐지한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폐업 또는 휴업 한 날까지에 징수한 또는 징수 하여야 할 도축세를 신고 납입 하여야 한다.

제 57 조 (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할 구청장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구청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

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8 조 (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장 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 비치하여야 한다.

1. 도살년월일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파세표 준액 및 해당 도축세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로 하여금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장경영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59 조 (가산세액등의 징수) ① 제 5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도축세는 그 납부기간을 15일

49-24 제 591 호 시

보 1977.2.18

<p>이내로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p> <p>(2) 구청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도축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p> <p>제 10 절 마권세</p> <p>제 60 조 (납시의무자) 마권세는 경마를 할때마다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부과한다.</p> <p>제 61 조 (세율) 마권세의 세율은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하여 얹은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p> <p>제 62 조 (신고의무) (1) 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하여 얹은 금액과 그 해당 세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p> <p>(3) 구청장이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한국마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p> <p>제 63 조 (납부) 한국마사회는 경마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p>	<p>5일까지 그 납부하여야 할 납부금을 관할구에 납부하여야 한다.</p> <p>제 64 조 (장부비치의 의무) 한국마사회는 경마에 대하여 각경마마다 다음사항을 장부에 기재비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2. 법 제 234 조의 10의 규정에 의한 마권세액3.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의 승마투표처증수4. 승마투표의 처증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유 <p>제 65 조 (장부기재사항의 신고의무) 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후 즉시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2.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
--	--

<p>투표권의 편면금액별로 승마투표적중수</p> <p>3. 승마투표의 적중자가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승마투표권의 배수 및 금액</p> <p>제 66 조 (가산세액 등의 징수) ① 제 6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마권세는 그 날부기한을 15일이내로 하여 한국마사회로부터 징수한다.</p> <p>② 구청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마권세액으로 하여 한국마사회로부터 징수한다.</p> <p>제 67 조 (징수교부금의 지급) 구청장이 영제 194 조의 5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은 한국마사회가 법제 234 조의 11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마권세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p> <p>제 11절 도시계획세</p> <p>제 68 조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선</p>	<p>부작권이 결정고시한 시 도시계획 구역의 전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날기개시일 현재의 소유자(법제 182 조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남세의 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부과한다.</p> <p>제 69 조 (납세관리인의 지정) 구청장은 도시계획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 68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 70 조 (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영제 195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으로 한다.</p> <p>(2) 제 1 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은 날기개시일 현재 시행되는 법제 111 조제 2 항 단서 및 영제 80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 가표준액에 의한다.</p> <p>제 71 조 (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p>
--	---

49-26 제 591 호

시

보 1977.2.18

제 72 조 (부과구역의 변경 공고) 시
장은 도시계획세 부과구역의 변
동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제 63 조
의 규정에 의한 부과구역의 변
경을 제 73 조에 의한 날기개시일
30 일 전까지 시의회의 의견을 얻
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73 조 (날기) 도시계획세의 날기
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
산세의 날기로 하고 세액의 고
지는 재산세의 고지서에 병기하
여 발부한다.

제 74 조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는 재산세 부과징수와
예에 의한다.

제 75 조 (과세대장비치) 구청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 징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대장을 비
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
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세과
세대장에 병기하여 겸용할 수
있다.

제 76 조 (신고의무)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을 건을 취득하였거나 과

세대상의 정황이 변경된 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제 34 조 내
지 제 35 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직권등재는 제 38 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 다만 재산세에 관한 신
고를 한 때에는 이들 도시계획세
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 12 절 소방공동시설세

제 77 조 (납세의무자) 소방공동시설
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 제 180 조제 2 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동조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
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 78 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
소방공동시설세는 법 제 111 조제 2 항
단서 및 영 제 80 조의 규정에 의
한 건축물과 선박의 가액을 과세
표준액으로 하여 다음의 자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백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1천만원 " " 0.8

2천만원 " " 1.0

3천만원 " " 1.2

5천만원 " " 1.4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 1.6

② 법제 240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79조(납기 및 납세고지) 소방 공동시설세의 납기는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로 하 고 세액의 고지는 재산세의 고지서에 명기하여 발부한다.

제80조(부과징수)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징수는 재산세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13 절 사업소세

제81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

에 의한다.

1. 재산할

납기개시일 현재의 사업소 연 면적

2. 종업원할

매월 말 현재 당해월에 지급된 종업원의 급여총액

제82조(세율)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1.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평당 500원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제83조(납기) ① 종업원 할의 납 세의무자는 법제 2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이 월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법제 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49-28 제 591 호

서

보 1977.2.18

<p>(3)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소세를 납부하기 한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제 84 조 (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구조·용도·층수·건축물의 연면적·총법원수·급여총액·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건물이 과세대상건물로 되었을 때 4. 과세대상건물이 비과세대상건물 	<p>로 되 때</p> <p>5. 건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p> <p>제 85 조 (대장비치) 구청장은 사업 소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 2945 호·지방세법·증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p> <p>②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 786 호·서울특별시세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p> <p>③ (적용례) 제 25 조제 2 호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1977년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p> <p>④ (적용례) 제 81 조내지 제 85 조의 규정은 197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p>
---	--

규 칙

서울특별시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규정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2월 18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672 호

서울특별시 도로관련사업조정
위원회규정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3조 제 1호중 「위원 25명」을
「위원 20명」으로 하고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원은 별표와 같다.

제 8조 제 2호중 「도로관리계장」을
「시설보수계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위원회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2월 18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673 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위원회
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위원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 중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조 (구성)

④ 위원은 기획관리관, 재무국장,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 주택국장,
녹지국장, 건설국장, 하수국장, 수도
국장이 된다.

다만 위원이 아닌 관계국장(과
및 직할 사업소장을 포함한다)은
소관사무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전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 8328 : 76.

12.30)에 따라 변경 및 신설된
기구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한
위원으로 본다.

49-30 제 591 호

시

보 1977.2.18

(별 표)

근무부서명	직위
1. 한국전력주식회사	송변전부장
2. 한국전력주식회사	배전부장
3. 한국전력주식회사	서울전력소장
4. 체신부	시설국장
5. 체신부	서울전신전화건설국장
6. 체신부	국제전신전화건설국장
7. 체신부	서울체신청 공무과장
8. 국방부	시설국장
9. 서울특별시	도로과장
10. 서울특별시	도로시설과장
11.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과장
12. 서울특별시	구획정리과장
13. 서울특별시	하수시설과장
14. 서울특별시	급수과장
15. 서울특별시	수원과장
16. 서울특별시	시설과장
17.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과장
18.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소장
19.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 건설과장
20. 서울특별시	경찰국 교통과장

<p>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중 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 구자준 1977년 2월 18일</p> <p>◎서울특별시규칙 제 1674 호</p> <p>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중 다음과</p>	<p>같이 개정한다.</p> <p>별표중 "환경파" 제 1호를 별지와 같이하고 제 2호를 삭제하여 "운수 3파"란 제 1호 다음에 제 2호내지 제 17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197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p>
---	---

"별 표"

실과명	위 입 사 무 명	위임구분	위임기관	근거및 적용법 규
환경파	<p>1. 공장또는 사업장(폐수 500㎘/일 미만배출업소또는 액체연료 1,000㎘/년미만사용업소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의 권한</p> <p>1) 배출시설의 설치및 변경허가</p> <p>2) 배출시설설치완료신고처리</p> <p>3) 공해방지시설 개선명령</p> <p>4) 배출시설 이전명령</p> <p>5) 배출시설 조업정지처분</p> <p>6) 배출시설 허가취소</p>	내부위임	구청장	<p>공해방지법 제 4조</p> <p>" 제 5조</p> <p>" 제 6조</p> <p>" 제 7조</p> <p>" 제 8조</p> <p>" 제 9조</p>

49-32 제 591 호 시

보 1977.2.18

실과명	위 임 사 무 명	위임구분	위임기관	근거 및 적용법규
운수 3과	2. 자동차 신규등록	내부위임	자동차등록사업소장	도로운송차량법제7조
	3. 자동차 이전등록	"	"	제 12조
	4. 자동차 이 관등록	"	"	제 13조
	5. 자동차 변경등록	"	"	제 11조
	6. 자동차 말소등록	"	"	제 14조
	7. 근처당권 설정 및 말소	"	"	자동차 저당법
	8. 자동차계속점사 (연기 및 타 관할)	"	"	도로운송차량법제 49, 52조
	9. 자동차 번호지정	"	"	제 9조
	10. 자동차 봉인	"	"	제 10조
	11. 자동차등록원 부동초본발급	"	"	제 20조
	12. 자동차검사증 교부	"	"	제 58조
	13. 신규 검사증 교부	"	"	제 48조
	14. 기관 재사용 증명원	"	"	제 54조
	15. 자동차 등록 검인	"	"	제 15조
	16. 자동차 임시 검사	"	"	제 51조
	17. 자동차 임시 운행증	"	"	제 33조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4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일부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1. 당시 관내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신설·일부변경 결정
하고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 한다.
2. 관재 도면은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7. 2. 17

서울특별시장

○ 결정(신설·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	시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6m	200m	서대문구 불광동 312-1	서대문구 불광동 345-50	
변경	"	"		"	220	" 346-2	" 345-50	위치 변경
기정	"	"		"	100	" 309	" 323-2	
변경	"	"		"	100	" 309	"	"
신설	"	"		"	65	" 남가좌동 230-20	" 남가좌동 64-59	신설
기정	"	1		10	320	" 홍제동 315	" 홍제동 330	
변경	"	"		"	280	"	"	위치 변경
기정	"	3		6	150	강남구 풍납동 306-30	강남구 풍납동 283	
변경	"	"		"	"	"	"	위치 변경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 생략)

49-34 제 591 호 서

보 1977.2.18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5호 동사무소 위치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일부 동사무소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한다. 1977. 2. 1 서울특별시장 구자준
---	--

동사무소명	위치변경 내용		변경일자
	변경전	변경후	
관악구봉천7동사무소	관악구봉천동 419	관악구봉천동 120-2	77. 1. 24
관악구방배동사무소	관악구방배동 46-2	관악구방배동 26-6	77. 1. 24
관악구봉천5동사무소	관악구봉천동 466	관악구봉천동산 101-65	77. 1. 24
도봉구 월계동사무소	도봉구월계동 383-30	도봉구월계동 66-5	77. 1. 31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7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제 13호 ('77.1.26)로 추가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을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규정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보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	실 및 동양공업 전문학교 서부파 에 각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 2. 18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척동산 58 의 5 의 12 블록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학교) 동양공업 전문학교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10,841 ㎡ (3,279.3 평)
---	--

제 591 호 시 보 1977.2.18 49-35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학교법인 동양학원 이사장 조홍제	나. 준공예정일 : 1977.6.30
5. 사업의 확수 및 준공예정일	6.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가. 확수년월일 : 시행허가 즉시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평)	비고
영등포구고척동	산58-1	임	5,485평중 38.4	학교법인 동양학원
"	산58-5	"	30 "	28.7
"	산58-6	"	1,080 "	910.0
"	산59-1	"	930 "	930
"	62-160	대	6,850 "	462.0
"	52-167	"		30
"	산59-13	"		62 학교법인 동양학원 (환지 예정)
"	산59-4	"		53.6
"	-5	"		53.6
"	-6	"		53.6
"	-7 라	"		52.9
"	-7 마	"		50.3
"	-7 바	"		51.0
"	-7 사	"		51.0

49-36 제 591 호 시

보 1977.2.18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비고
영등포구 고척동	산 59-7 아	대	6,850 평중 51.0	학교법인 동아학원 (환자 예정)
	-7자		57.6	"
녹지			328 평중 153.0	시유지
도로			95.6	"
유보지			121 평중 96.0	"
제			3,279.3	(10,841 ㎡)

공고

④ 서울특별시 공고 제 29 호

표시정지처분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및 동법시행규

칙 운영요강 제 27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정지처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77.2.3

서울특별시장

- | | |
|--------------------------------------|-------------------|
| 1. 허가번호 : 제 282 호 | 제 297 호 |
| 2. 허가일자 : 67.7.27 | 67.11.23 |
| 3. 제조업체명 : 동아건설(주) | 좌동 |
| 4. 대표자 : 최원석 | 좌동 |
| 5.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2 가 27 번지 | 좌동 |
| 6. 규격번호 : KSB 1002 | KSB 1012 |
| 7. 품명 : 6 각보울트(미터나사) | 6 각너트 |
| 8. 처분기간 : 1977.2.2 - 77.3.2 | 1977.2.2 - 77.3.2 |
| 9. 표시정지사유 : KS 규격미달 | KS 규격미달 |
| 10. 기준미달항목 : 나사부 | 나사부 |

제 591 호

시 보

1977.2.25 49-27

⑤ 서울특별시 공고 제 32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 품
생산지정업체 지정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 품 생산
지정업체 지정요령 제 3 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 품 생산지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 동요령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77. 2

서울특별시장

○ 지정업체 조서

지정 번호	기 이름	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 품명	77년 수출 목표액
450	유풍직물공업(주)	류전하	류전하	성동 성수동 2가 310-3	파일, 완구	\$2,800,000
917	동해실업(주)	채현년	채현년	영등포 가리봉동 481-2	견적 물	1,600,000

⑥ 서울특별시 공고 제 36 호

합니다.

가로명 지정 공고

다음과 같이 가로명을 지정 공고

1977. 2. 18

서울특별시장 구자준

가로명	구간	폭원	면장	비고
태해란로	여의도동 1의 101-1의 552 (여의교 북단)	35m	1,000m	위치노: 생략

49-38 제 591 호 시 보 1977.2.25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8 호

도시계획시설(지하도)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지하도)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 25조

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1977. 2. 18

서울특별시장

가.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비고
신설	지하도	중구회현동 194-9, 10부근	B = 3m L = 20m	옥외주차장연결지하차도
"	"	월동 82-1, 4, 5부근	"	신구관연결지하보도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예 규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업무 (승인,
복구) 지침 중 개정지침을 다음과

1977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제 591 호 시

보

1977. 2. 18 49-39

◎ 서울특별시 예규 제 340 호

서울시 도로굴착업무
(승인·복구) 지침

1. 목적

- 가. 도로굴착 승인업무의 사전조정으로 합리적인 도로관리
- 나.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고율적 운영
- 다. 도로굴착 원인자의 신청으로 합리적인 도로관리
- 라. 도로굴착 복구업무의 조정으로 신속 정확한 복구

2. 도로굴착 조정 기준

가. 본청조정대상

도로폭 12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

- 1) 아스팔트 연장 100m 이상 굴착
- 2) 콘크리트, 보도부석 연장 500m 이상 굴착

- 3) 기타 도로횡단굴착으로 교통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굴착

나. 구청(출장소 포함) 조정대상

본청 조정대상분을 제외한 일체의 굴착

3.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 및 공고

가.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소집

- 1) 1차: 매년 2월초

- 2) 2차: 매년 8월초

나. 신청공고 및 접수

- 1) 1차: 12월 공고 (1.1~1.31 까지 접수)

- 2) 2차: 6월 공고 (7.1~7.31 까지 접수)

4. 도로굴착승인 세부사항

가. 공공기관 및 일반인등 (이상 "신청자"라 한다)은 위 공고 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도로굴착조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 1) 도로굴착 조정신청서 (별첨 2)

1부

- 2) 위치약도 (1/5,000 지척도)

4부

- 3) 굴착 평면도 (굴착단면도첨부)

4부

나. 구청장은 신청분에 대하여 구청조정분은 현지 조정후 신청인에게 결과통보하고 본청조정분은 현장조사자의 의견을 첨부 본청에 전달한다.

다. 본청(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에서는 굴착시기, 일정, 공법등을 조정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라. 구청장은 본청에서 통보된

글착시기 일정 공법등을 해당신청인(기판분은 제외)에게 결과통보 한다.	마.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게 하며 변경시공에 따른 차액은 환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구청장은 본청에서 조정통보된 기간중에 해당신청자로 부터 글착승인 신청서(글착계획서 첨부)를 접수하여 현지조사후 조사자의 의견을 첨부 본청에 진달한다.	6. 신청누락분 처리
바. 구청장은 본청승인통보분 및 구청승인통보분에 대하여 도로글착복구비 고지서를 발부한다.	가. 신청자의 추가 사업분(사업변경분 포함) 또는 공고기간내의 신청누락분으로 다음 "나" 항의 의의 것은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한다.
사. 신청자는 복구비를 구청장에게 납부한 후 글착승인서를 교부받아 글착작업에 착수한다.	나. 공고에 의한 신고누락부증 및 광목의 소규모(12평미만의 개인건축등) 글착은 수시 승인한다.
5. 도로글착 승인규제	7. 글착복구방침
가. 매년 2회 서울특별시에서 공고하는 사업으로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기간내에 신청된 분에 한하여 승인한다.	구청장은 글착승인시 별지 6호서식에 의한 복구작업을 지시 또는 의뢰한다.
나. 포장공사 시행후 만 1년간은 글착을 통제할을 원칙으로 한다.	가. 아스팔트 및 사리도
다. 우기(7~8월경)와 동절기(12월~익년 2월경)에는 글착을 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구청장은 건설사업소장에게 복구의뢰
라. 도심지 간선 및 교통혼잡지역의 글착은 야간작업을 원칙으로 승인한다.	2) 건설사업소장은 직접복구하거나 또는 건설업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복구한다.

제 591 호

시

보

1977. 2. 18 49-41

8. 행정처리절차	마. 도로굴착에 관한업무는 서울특별시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외에는 이 지침에 의한다.
가. 도로관련 사업조정위원회의 개최는 본청에서 주관한다.	
나. 도로굴착 승인신청공고는 본청에서 공고한다.	
다. 본청 및 구청은 굴착복구 사황판을 설치운영하여 굴착복구상태를 즉시 파악할수 있도록한다.	9. 서울특별시 도로굴착업무(승인, 복구)지침(서울특별시례규 제314호 76.1.제정)은 이 지침 적용일로부터 이를 폐지한다.
라. 매월말 구청장은 굴착승인및 복구비징수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종합보고한다	10. 이 지침은 1977.1.1.부터 적용한다.

양식 1-1

도로굴착조정신청서

주소 :

성명(기관명) :

아래와같이 도로를 굴착코자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굴착장소	굴착규모	복구비	굴착기간	굴착목적	시행기관	비고
					.		

첨부: 1. 위치약도 (1/25,000 관리도네 표시) 2부

197 . . .
신청인 ○ ○ ○ (인)

서울특별시 장관

49-42 제 591 호

시

보

1977.2.18

양식 2

도로 굴착승인신청서

주 소

성명(기판명)

아래와 같이 도로는 굴착코저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릅니다.

굴착장소				
굴착목적				
굴	포장별	연장	굴착폭	면적
착	아스팔트			
규	콘크리트			
모	보도부록			
	사리도			
굴착기간				

- 구비서류 1. 굴착신청서(굴착작업 계획서첨부) 1부
 2. 위치약도(1/5,000 지적도에 표시) 4부
 3. 굴착평면도(굴착단면도포함) 4부

* 위치약도에 굴착작업시기, 일정을 표시할것.

197 . . .

신청인 ○ ○ ○ (인)

○ ○ ○ 구 청 장 귀 하

제 591 호 시 보 1977. 2. 18. - 63

양식 3

도로 굴착 신청 현장 조사서

명예 의하여 도로 굴착 신청승인에 따른 현장 조사한 바를 다음과 같이 복명합니다.

197 . . .

조사자 직명

성명 ○ ○ ○ 원

다음

신청자	주 소							
	성 명							
굴착 위치								
굴착 목적								
굴 착 규 모	포장별	연장	굴착폭	면적	포장등급	복구비	조사시기	
	아스팔트							
	콩크리트							
	보도부록							
	사리도							
계								
굴착 시기								
조사자 의견								

첨부: 1. 위치약도 (1/5,000 지도에 표시) 1부
2. 굴착면도 (굴착단면도 첨부) 1부

○ ○ ○ 구 철 장 귀 하

49-44 제 591호

시

보 1977. 2. 18

양식 4

굴착작업계획서

주소

설명

다음 일정과 같이 굴착작업교체 작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97 . . .

신청인 ○ ○ ○ (인)

다 음

1. 굴착장소

2. 굴착목적

3. 굴착규모 아스팔트()m 콩크리트()m
 보도부록()m 사리도()m

4. 굴착시기 197 . . . ~ 197 . . .

5. 굴착일별계획 (첨부 1/5,000지적도에 굴착일별 계획도면 1부 첨부)

번호	일자	작업시간	굴착구간	당일굴착연장	비고

○ ○ ○ 구 청 장 귀 하

제 591 호

시

보

1977. 18 44-45

양식 5

도로굴착승인

공사명 :

신청자 :

굴착위치 :

굴착기간 :

굴착개요 : 포장층별 연장 폭 면적 부구비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부록

시라도

제

원인자부담금

원납부확인진명

상경

상기 도로 굴착은 하기 조건으로 승인함.

첨부 : 위치 약도 1부

굴착평면도 1부

197

○ ○ ○ 구 청 장 (인)

부
판

1. 소정의 원인자 부담금은 벌첨 고지서에 의거 선납부한다.
2. 굴착도는 발생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모래 또는 왕모래로 불다짐하여 야 하며 시공후 가복구를 철저히 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타 지하매설물 횡단시는 맨홀을 양측이 설치하고 지하관로는 지상에서 2m이하로 매설한을 원칙으로 하여 당해 기관에 통지 협의하여 관계관 입회하에 타 지하매설물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만약 지장이 야기될 경우에는 굴착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미포장구간은 차후 포장공사 시공시 지장이 없도록 최소 1m 이상 깊이로 매설할 것이며 단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 시는 매설자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매설하여야 한다.

제 591 호

서

보

1977. 2. 18 49-47

양식 6

굴착 복구 작업 기사 내역

수신:

굴착 내 역				복구 차 시 내 역			
위 치	포 장 총 류	연 장	굴 착 일 시	시 행 체	(부 순 들 체 석) 기증 공	안 전 처 리 중 증 공	표 증 공 기 타

위 치 약 도

1404

49-48

제 591 호

시

보

1977. 2. 18.

양식 7

○ ○ ○ 구·출장소

토목 441-

경유 보고통제관

수신 서울특별시장

참조 도로보수과장

제목 도로굴착승인 및 굴착복구비 부과징수 현황보고

(OC월분)

당구 년 월 중 도로굴착 승인현황 및 굴착 복구비 부과징수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월중 도로굴착승인 및 복구비 부과징수현황

굴착위치	신청자	포장종류	연장	폭	면적	조정액	징수액	미징수액	비고
합계	○○건		m	m	m ²				

2. 진급누수굴착승인 및 복구비부과 징수현황

굴착위치	신청자	포장종류	연장	면적	단가	조정액	징수액	미징수액	비고
합계	○○건		m	m ²					

사 령	국회 사무처 전명회	
◎ 1977. 2. 16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온평출장소 지방행정사무관	유·원·충	16호봉을 급함.
운영과 교육훈련계장에 보함.		운평출장소 근무를 명함.
시정개발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김·기·종	동대문구 지방행정사무관 도기봉 원에 위하여 그장을 역임.
문화재 담당관 문화재 1계장에 보함.		부산시 지방행정사무관 차영립 서울특별시 천일을 경한.
◎ 1977. 2. 17		송로구 근무를 명함.
국회 사무처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김기만	새마을지도과 지방행정주사 박지택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7호봉을 급함.
강남구 근무를 명함.		중구 근무를 명함.

서 울 특 별 시 장